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와 경기도 시사점

목차

- I.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
-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 III. 정책제언

2024년 중앙정부 저소득정책 주요변화는 대상자 확대

-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48%로 인상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환경변화에 맞춰 코로나19를 위기사유에서 삭제하고 전세사기를 새롭게 포함
 -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라는 주요 전략에 따른 정책변화
- ▶ 그러나 대상자 확대, 보장성 강화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짐
 -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도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사각지대는 감소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및 인력부담 증대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경기도 내 비수급 빈곤가구가 최소 88.9천 명에서 최대 103.6천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최대 335.8억원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예상됨
 - 2024년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288억 원~335.7억 원, 시군은 143.5억 원~167.3억 원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사회복지공무원은 177명~206명으로 나타남
-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변화보다는 코로나19의 후폭풍,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위기가구 증대가 예상됨

정책제언

- ▶ 비수급빈곤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제언 필요
-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보장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운영 필요



ISSN 2982-5547

I.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자산조사(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수급가구를 선정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변경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서 운영됨
- ▶ 2023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2024년~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화를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재가의료급여 확대, 급여 보장성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며,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발표됨

〈표 1〉 2023년 기준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추진 과제	2023년 현재	2026년
급여 보장 수준 강화	국민 생활의 최저수준 향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자수 159.3만 명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32%로 상향 *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 생계급여 수급자수 180.7만 명(+21.4만 명(+α))
	필수건강 투자 확대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73개 시군구) · 과다 의료이용 관리 중심 사례관리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228개 시군구) · 건강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사례관리
	최저주거 보장 수준 제고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의 75% 지원 ·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 기준임대료 현실화 · 주거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지원 확대 * 재해취약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최저교육비의 90% 지원 * (초) 41.5만 원 (중) 58.9만 원 (고) 65.4만 원	·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 100% 달성
빈곤 시각 지대 적극 해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2.9%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3.0%(+5만 명(+α))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 소득환산율 월 100% ▲ 예외적으로 4.17% 적용 ▲ 생업용 50% 재산가액 산정	· 자동차 재산 ▲ 소득환산율 인하 ▲ 4.17% 적용 자동차 확대 (다인·다차녀, 도서벽지 등) ▲ 생업용 재산가액 산정 제외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수급자수 233.3만 명	· 주거급여 선정기준 '24년 48%로 상향 * 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 주거급여 수급자수 252.8만 명(+19.5만 명)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 24세 이하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공제율 30% 일괄 적용	· 30세 미만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노동시장 참여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5.9만 명('22년) · 자활 성공률 24.3%('22년)	·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 자활 성공률 27%
	자산형성 지원	· 자활기업 2년 유지율 81.8%('22년)	· 자활기업 2년 유지율 85%
		· 자산형성 수혜자 11.3만 명(누적)	· 자산형성 수혜자 15만 명(누적)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p.60.

I.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

‘24년 긴급복지사업의 주요 변화는 위기사유 확대(전세사기 피해)와 보장성 강화

- ▶ 이 중에서 2024년에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임¹⁾
 - 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급여(30%→32%), 주거급여(47%→48%) 선정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반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해 저소득층이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특히, 2024년 1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42.1%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요함²⁾
 -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최저교육비 인상

2024년 긴급복지사업은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³⁾

- ▶ 긴급복지사업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위기사유를 변경하는데, 2024년에는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됨
 - 긴급복지사업은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상실,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임. 이에 긴급복지사업 사업안내에는 다양한 위기사유들이 제시되어 있음
 -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이 중요한 위기사유였으나 환경변화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제외되었고,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됨
-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계지원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32%로 인상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과거 4인가구 기준 4,050,723원에서 2024년 4,297,434원으로 246,711원 증액
 - 보장성과 관련된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3).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3천 원 오른다.”.

2) 2024년 1월 기준 전체 수급자는 2,559,422명,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76,566명으로 42.1%를 차지함(복지로 복지통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7&datsCI=1012&datsCICrit=WS>. 2024.2.19. 검색)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I.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

'24년 저소득정책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은 완화되었지만 보장성 확대는 제한적임

전반적으로 대상자 확대에는 의의가 있으나 보장성을 확보하진 못함

- ▶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이슈 중 하나가 약자 복지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도 저소득정책 변화가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으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⁴⁾
- ▶ 중점과제로는 ①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②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③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가 제시됨⁵⁾
 -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노인빈곤 완화 지원,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가 포함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소외된 약자 권익보호 지원 강화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지원 강화
- ▶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경제위기 상황으로 2024년 저소득 정책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보장성 확대는 제한적임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3년간 21.4만 명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음. 또한 긴급복지사업에서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높였으나 급여지급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함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사업의 급여수준이 인상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음. 그러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gallery.es?mid=a10607030000&bid=0003&tag=&act=view&list_no=378847).

5)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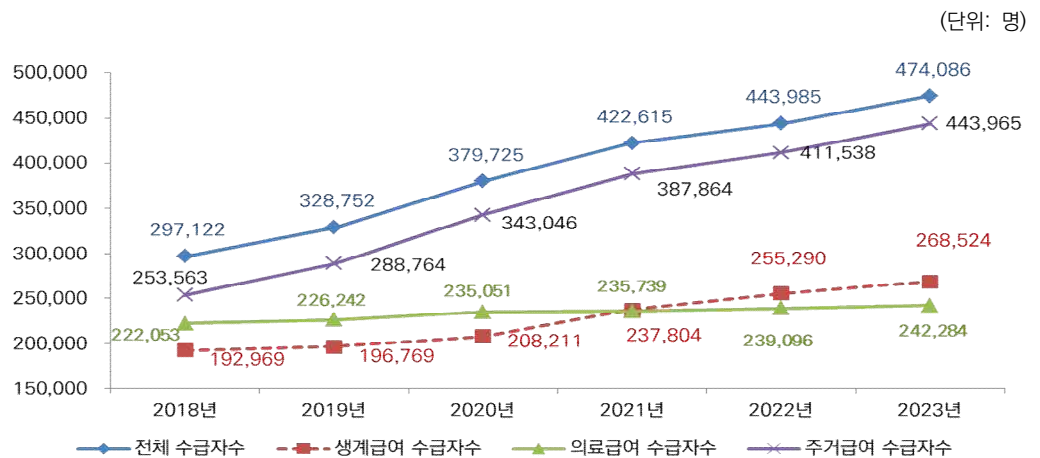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기도 사각지대 감소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22년 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는 167.7만 가구로 추정

-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수급자가 2018년 대비 2023년 1.6배 증가하였음
 -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97,122명이었고, 이는 2023년 474,086명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2018년 253,563명이었던 것이 2023년 443,965명까지 증가함
 -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8년 192,969명에서 2021년 237,804명, 2023년 268,524명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021년부터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수가 적음

〈그림 1〉 경기도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전체, 생계·의료·주거급여)



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별 수급자수(중복허용). 복지포털 복지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7&datsCI=1012&datsCICrit=W.S>). 2024.2.19. 검색

- ▶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확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경기도의 비수급빈곤가구는 167.7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음⁶⁾
 - 2022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 규모를 살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0.6%인 35.1만 가구로 나타남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가구는 2.8%인 167.7만 가구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소득자료만 활용한 비수급 빈곤가구보다 규모가 작음
 - 한국복지패널조사 중 경기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것이며 복지패널에서 산출한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을 주민등록가구에 적용해 산출된 규모임

6) 성은미·김형선·박예은(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경기복지재단.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라
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가
최대 103.6천 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경기도 내 비수급빈곤가구가 최소 88.9천 가구에서 최대 103.6천 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30%→32%)로 48.8천~56.9천 가구가 신규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계급여 수급 비율이 현재 3.7%에서 최대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⁷⁾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47%→48%)로 40.1천~46.7천 가구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현재 5.3%에서 최대 6.1%까지 높아질 예정임

〈표 2〉 경기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상자 규모 추계

(단위: 가구, %)

구분	증가하는 가구수		수급가구수		선정기준 상향후 수급 비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현재 수급비율	최소	최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32%로 상향	48,826	56,899	266,526	274,599	3.7%	4.5%	4.6%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48%로 상향	40,079	46,707	355,648	362,276	5.3%	6.0%	6.1%

*주: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
 생계급여 수급 가구수=217,700(2023.10월 기준), 전체 가구수=5,927,794(2023.10월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48%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한 수치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활용(17차 웨이브).
 출처: 성은미 외(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경기복지재단.

-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88.9천~103.6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감소 효과가 발생

〈표 3〉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대상자 규모 추계

(단위: 가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32%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증가하는 수급가구수
중위소득 기준 32%	최소*	48%	최소*	88,905
		48%	최대	95,532
	최대	48%	최소	96,978
		48%	최대	103,606

*주: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
 생계급여 수급 가구수=217,700(2023.10월 기준), 전체 가구수=5,927,794(2023.10월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48%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한 수치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활용(17차 웨이브)
 출처: 성은미 외(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경기복지재단.

7) 한국복지패널 2022년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구체적인 추계 방식은 성은미 외(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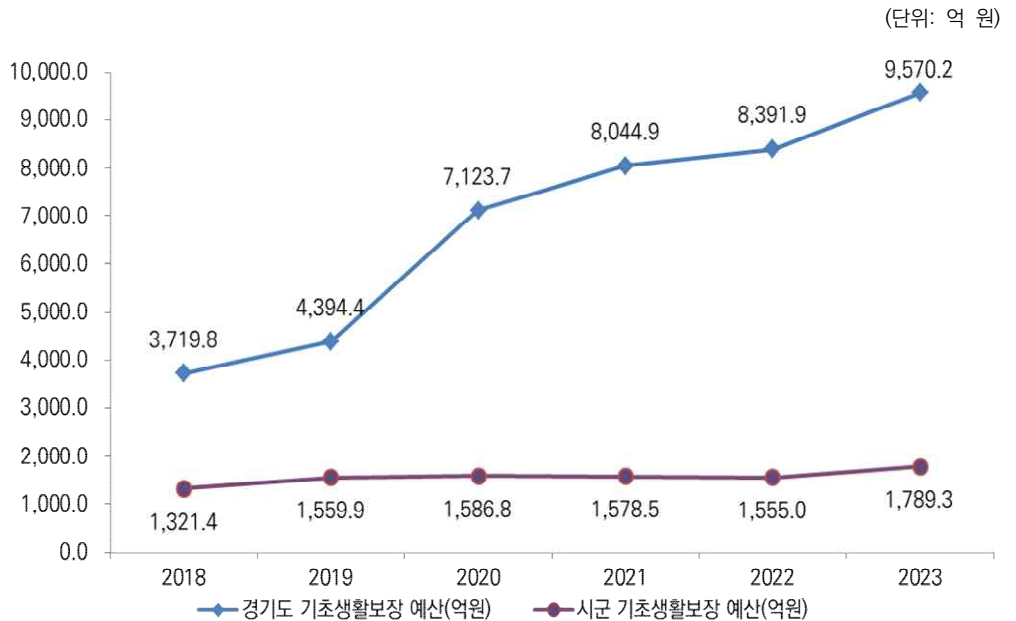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중앙의 정책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288억 원~335.7억으로 예상

대상자 확대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으로 직결

- ▶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시군과 도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으로 연결됨
-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8년 대비 2023년 2.6배 증가하였고, 시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4배 증가하였음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8년 3,719.8억 원이었던 것이 2023년 9,570.2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시군 기초생활보장 예산 역시 2018년 1,321.4억 원에서 2023년 1,789.3억 원으로 증가함

〈그림 2〉 경기도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예산 및 경기도 부담분



자료: 연도별·세부사업별 세출현황(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 2024.2.19. 검색).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 확대로 이미 예산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2024년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288억 원~335.7억 원, 시군은 143.5억 원~167.3억 원으로 나타남
 - 제도 확대는 예산 증가로 연결되어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정은 3,962억 원~4,617억 원으로 나타남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경기도 143.3~226.5억 원, 시비는 96.8억 원~112.8억 원으로 나타남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표 4〉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단위: 억 원)

제도 변화 기준				생계+주거급여 증액 예산			생계급여 증액 예산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총액	경기도비	시비	경기도비	시비
중위소득 기준 32%	최소*	48%	최소	3,962.0	288.0	143.5	194.3	96.8
		48%	최대	4,175.2	303.5	151.2	194.3	96.8
	최대	48%	최소	4,404.0	320.2	159.5	226.5	112.8
		48%	최대	4,617.2	335.7	167.3	226.5	112.8

*: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

**: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456,228원, 주거급여는 2024년 1인, 2급지(경기도) 기준 268,000원을 기준으로 예산 산출

출처: 성은미 외(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경기복지재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로 177명~206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필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는 대상자 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성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가 780명에 달하는 수준임

-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873명, 읍면동은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78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18개 시의 경우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840명에 달하는 상황임⁸⁾
- 김희성 외(2022)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는 시군 722명, 읍면동 747명인데, 현재 경기도는 이를 초과한 상황임

〈표 5〉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

(단위: 명)

구분	현황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	
	시군청			읍면동			시군청	읍면동
	기존 복지대상자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기존 복지대상자*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31개 시군 총계	3,156,857	3,617	873	3,403,998	4,367	780	722	747
인구 50만 이상 시	1,842,085	2,079	886	1,982,569	2,630	754	890	680
인구 50만 미만 시	1,236,782	1,416	873	1,337,101	1,592	840	680	820
인구 5만 이상 군	59,924	90	666	64,586	115	562	450	570
인구 5만 미만 군	18,066	32	565	19,742	30	658	340	450

*: 복지대상자는 기타복지 1, 기초생활수급자 1,484, 차상위급여는 1,457명으로 간주해 계산한 것임(읍면동만 적용)

출처: 김희성 외.(202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연구』. 보건사회연구원. pp. 277; 279~291에 제시된 복지대상자수 중 경기도만 추출해 재계산한 수치임

▶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가 초과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사회복지공무원은 177명~206명으로 나타남

- 이미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가 초과된 상황에서 수급가구의 증가는 업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이에 증가하는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 177명~206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8) 복지대상자수는 기타복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급여를 모두 합한 값임

II.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

정책변화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긴급복지사업의 확대 준비 필요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 변화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대에 대한 대비 필요

- ▶ 경기도는 중앙정부 긴급복지와 별도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정부 긴급복지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중앙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2006년부터 운영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단기간 지원하는 정책임.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8년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도입해 운영(초기 도입 당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표 6〉 중앙정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중앙정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중위소득 100%
급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간병비
공통점	선지원 후심사,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	

- ▶ 2024년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인력적 측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받던 대상자가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편입됨. 그러나 위기가구의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위기가구는 다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됨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더라도 이미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해당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 정책변화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련한 준비가 필요
 - 코로나19의 후폭풍,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지난 14일 부천에서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⁹⁾, 이와 같은 위기가구 증대는 인력 및 재정부담 증가로 연결
 - 2024년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전국 110,113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1,141.2억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긴급복지 결산금액인 1,073.9억 원보다 673억 원 증액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2024년 26,836명을 대상으로 278.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이는 2023년에 비해 20억 증액된 수치임

9) 연합뉴스(2024.2.14.).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부천 아파트서 모녀 숨진채 발견".

경기도 및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위기의
장기화·만성화 등
현실을 반영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개선 및 운영 필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인력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저소득정책 변화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부담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요구가 필요
 -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부담이 증대하고, 필요 인력도 증대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중앙정부에 예산부담 완화, 필요인력 확충을 건의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
- ▶ 시군 부담 증가가 비수급빈곤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정 정도 경기도에 재정적, 인력적 부담이 되더라도 사각지대 감소, 위기가구 지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생계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상향되고,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상향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 인력적 부담문제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지,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모니터링 필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보장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운영

- ▶ 코로나19의 후폭풍,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중요함
 -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모두 일시적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긴 상황임
 - 이에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실업과 폐업, 화재, 폭력, 전세 사기, 위기 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긴급통합지원을 적극 확대
 - 위기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소득 및 재산기준을 넘어서 가구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위한 긴급통합 지원급여를 운영 중
 - 다만,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군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